

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67
--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1.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관 련 부서 : 기획관리과

□ 개정사유

2003학년도 소규모학교 통·폐합계획이 수정됨에 따라 당초계획에 없었던 보은동광초등학교 학림분교장이 2003. 3. 1자로 폐지되어 도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함.

□ 주요골자

- 2003. 3. 1일 폐지되는 동광초등학교학림분교장을 삭제함(별표4).
- 2003. 3. 1일 폐지되는 동광초등학교학림분교장병설유치원을 삭제함(별표6).

□ 개정근거

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4조

□ 조례안 : 불임

□ 참고사항

- 소규모학교 통·폐합 : 분교장 및 병설유치원 폐지(1교, 1개원)

학 교 명	위 치	폐지년월일	폐지사유
동광초등학교 학 림 분 교 장	충북 보은군 보은읍 중동리 9-1	2003. 3. 1	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
동광초등학교 학 림 분 교 장 병 설 유 치 원	"	"	분교장폐지

* 행정예고견과 이견없음

□ 덧 불임 : 신·구 조문대조표, 관계법령 밝쳐서

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중 동광초등학교학림분교장란을 삭제한다.

별표 6중 동광초등학교학림분교장병설유치원란을 삭제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이 조례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교육기본법

제11조(학교 등의 설립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설립·경영한다.

□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

제34조(교육기관의 설치) ① 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·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